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1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5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결과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98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② (생략)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하고,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④ · ⑤ (생략)

<신설>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4.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자율안전검사의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1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제90조제4항, 제98조의2제1항-----

3. 4.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 8. (생 략) ⑤ ~ ⑦ (생 략)	5의2.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 <u>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6.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함)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이하 “안전검사”라 함) 하고,¹⁾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안전검사와 같은 기준과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

1)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함)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²⁾.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거나,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인정된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와 같은 현행법령 하에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2년

2)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주가 자율안전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벌의 대상이 되므로⁴⁾,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인정된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자율안전검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인정 업무를 위탁 시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검사 프로그램 수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사유 발생시 해당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장에서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 대상에 해당하여 지방관서에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 지방관서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조사하여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

5) 「위험기계 안전검사업무 처리지침」 제32조(모니터링) ①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결과 최근 2년 연속 차하위등급 이하를 받거나 평가가 제외된 기관에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위탁한 경우
3.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사유발생시 해당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